

2022년 기간제근로자(정보화 전담인력) 채용 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공단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8월 19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직급	세부구분	채용인원*	비 고
전임위원 (정보화 전담인력)	기간제	일반직 3급 상당	1명	· 시스템 인프라 설계·구축·운영 경력 15년 이상 ·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PM 유경험자

* 채용심사 후 소정의 점수에 미달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근무부서	계약기간 ¹⁾	근무지 ²⁾	근로시간	보수(年) ³⁾
정보관리실	'22. 10. 4. ~ '26. 4. 30.	경남 진주시 소호로10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 40시간 (주 5일, 8시간/일)	3급-16등급 (64,223,550원)

1)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조기 종료될 경우에,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2) 사택 등 정주여건은 제공되지 않음

3) 보수(年)는 세부구분에 따른 상시 금액을 지급하되, 공단 「계약직 운영규칙」 제20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단 내규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담당업무

가. 응시자격

- 전산 관련 학사학위 또는 기사자격 이상
- 시스템 인프라 설계·구축·운영 경력 15년 이상
-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PM 유경험자
- 연령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62세)에 도달한 자 제외)
- **병역필**(임용일 전 전역가능자 포함) 또는 **면제자(비해당자)**
- 임용예정일(2022. 7. 1.)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아래 표 참고)가 없는 사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의 예외) 해외체류자,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용(예정)일을 유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내(~ '22. 12. 20.) 승인함

나. 담당업무

채용분야	담당업무
전임위원 (정보화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설계 및 운영·관리 • 시스템 인프라 설계 및 클라우드 계약 추진 • 관제센터 인프라 설계 및 구축 지원 •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 등

4. 가산점

구분	우대대상	대상전형	가산점* (만점 기준)	부 여 기 준
		면접		
법정	장애인	○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	5% 또는 10%	관련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가점이 높은 한 가지만 부여)
	의사상자	○	5% 또는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상자
한국사 자격증	전 분야	○	3%, 2%, 1%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자격자 - 1급: 3%, 2급: 2%, 3급: 1%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저소득층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다문화가족	○	5%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가산점의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

5.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자격 증빙서류 사본 1부(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 관련 학사학위 또는 기사자격증,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응시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담당 직무 및 직책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산점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면접전형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최종합격 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내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9조를 따른 서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 확인서류,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개별 안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는 '22. 9. 15.까지 제출(제출처: apply@koelsa.or.kr)

- 상기 일정까지 응시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산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면접전형)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세부 직무 및 입사일·퇴사일이 “년, 월, 일”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함(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 서류) 제출)

* 채용신체검사 수검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며 비용처리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6. 전형절차

전형 단계	주요 내용	일 정
① 공고	• 홈페이지, 잡알리오 등	'22. 8. 19.(금) ~ 9. 1.(목)
② 접수	• 접수처: apply@koelsa.or.kr	
③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22. 9. 7.(수)
④ 서류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22. 9. 7.(수) ~ 9. 15.(목)
⑤ 면접전형	• 집단면접	'22. 9. 20.(화)
⑥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이의신청 접수	'22. 9. 21.(수) '22. 9. 21.(수) ~ 10. 5.(수)
⑦ 임용	• 임용일	'22. 10. 4.(화)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서류전형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활용)하며, 최종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 '22. 12. 20.)로 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가 응시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허위로 판정될 경우 면접전형 응시 및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① 공고

공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잡알리오 '임직원 채용정보 현황'을 통해 공고

② 접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스캔파일(PDF)을 공단 채용담당 메일 (**apply@koelsa.or.kr**)로 제출

③ 서류전형

- (합격요건) 응시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 (불합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 동일내용 반복, 타사지원 내용,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항목별 100자 미만 작성 등
- (합격발표) '22. 9. 7.(수)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게시, 개별 안내

④ 면접전형

- (전형일자) '22. 9. 20.(화), 집단면접으로 진행
 - (전형장소) 공단 본부(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상세 안내 예정
 - (평가요소) ㉠ 직업관(직업윤리) ㉡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발전가능성 ㉤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합격자 결정)
 - ㉥ 평가요소별 산술평균값을 집계하여
 - ㉦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평점(산술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 * 가산점 부여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만 부여
 - ㉧ 고득점 순위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 동점자의 경우 직업관(직업윤리),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예의·품행 성실성, 발전가능성,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 (발표) '22. 9. 21.(수)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게시, 개별 안내
- (이의신청)
 - 접수기간: '22. 9. 21.(수) ~ 10. 5.(수)
 - 접수방법: 공단 채용담당 메일(apply@koelsa.or.kr)
 - 신청내용: 채용전형별 심각한 오류에 관한 정량적 사항으로서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사안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⑥ 임용

(임용일자) '22. 10. 4.(화) 예정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진, 학교명,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 없음
 - 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의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수집 예정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인적 사항인 성별, 가족사항, 학력 등 일체 기재 금지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 개인 인적사항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수집한 생년월일 등)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8.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제출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신청방법: 공단 채용담당 메일(apply@koelsa.or.kr)을 통해 접수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
 - 발송방법 및 일자: 추후 안내
- 지정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9.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 대비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준수 및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 다음의 대상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 의사환자: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면접전형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제한 조치
 -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면접 종료 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
- ※ 상기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제출완료 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이하 '응시원서')상 기재사항 수정불가
- 응시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는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
-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적용해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채용 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 해당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5. 제출서류 등'에 게시된 대로 접수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면접전형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채용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제출서류'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함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붙임 1)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함

- 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공단 채용담당자(☎ 055-751-0994)
 - * 효율적인 문의 응대를 위해 오후 2시 ~ 4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 1. NCS 직무 설명자료
2. 법정 우대사항(상세)
 3.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4. 이의신청 양식(서식)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6.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붙임 1] NCS 직무 설명자료

전산_직무기술서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0.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03. 정보기술운영	01. IT시스템관리 03. IT기술지원
채용분야	전산			
공단 주요사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핵심책무 (능력단위)	○ 정보기술·통신분야 개발·운영·유지관리			
직무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 운영·관리 ○ DBMS, 그룹웨어, 보안S/W 등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등 정보보안 관련 운영·관리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분석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언어 문법 및 디버깅검토 기법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조화 질의문(SQL) 기법 ○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관리 방법 및 상호 연관관계 이해 ○ 빅데이터 기획·분석·시각화 기술 관련 기법 			
필요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언어 활용 능력과 디버깅 기술 및 코드 검토 능력 ○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구조화 질의문(SQL) 구현 기술 ○ Unix, Linux, NT 서버 및 네트워크 사용·관리 			
직무수행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래밍 문법을 이해·활용하고 코드를 분석하기 위한 치밀한 태도 ○ 객관·중립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려는 태도와 지원·개선해 주려는 의식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역할분장, 신속대응 및 보고 의지 ○ 비즈니스 로직을 습득·숙지하고자 하는 능동적 의식 ○ 다양한 시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 			
필요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통신 분야 학위 전공자 또는 개발·운영·유지관리 경력자 ○ 정보기술·통신·정보보안 자격증 취득자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관리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 → NCS 학습모듈 검색 → NCS능력단위 정보 확인			

[붙임 2] 가산점 부여기준

가산점 부여기준

구 분		가산점	근 거
국가 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10%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5%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1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5%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등,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등,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5%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5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		

구 분		가산점	근 거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7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	
장애인		10%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
의사상자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8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9호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0호
다문화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1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을 갖춘 사람		1급 3%, 2급 2%, 3급 1%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2호
그 밖에 공단 업무수행 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변호사 등의 전문자격 및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정함)		3% 이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4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유공자로서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붙임 3]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공단 채용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있음 없음)

→ “있음”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관계

본인과의 관계	친인척 직원 성명	친인척 직원 소속	비고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함 생각하지 않음)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본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_____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_____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 양식(서식)

채용불합격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small>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7일</small>
신청인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내용 (구체적으로)	(신청이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1) 채용시험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시험출제·평과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붙임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6]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1. 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
-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 기획재정부)

2. 내용

- (피해자)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채용시 기회 부여
-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구 분	내 용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구 분	내 용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